##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2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조오섭·송갑석·양향자

이병훈ㆍ이규민ㆍ문진석

민형배 • 이용빈 • 인재근

안민석 • 윤영덕 • 박홍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국민의 주거권 보 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 록 하고 그 이전에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 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지구 확정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공공주택사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 태가 빈발하였음.

이에 2019. 4.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확대하여 공 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택지지구 지정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막 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더욱이 현행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보다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여전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의무대상을 공동주택사업자 일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하고, 이를 위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한 경우 해당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동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친족이 사전에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57조 및 제60조).

####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소속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지정 또는 변경일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역 내의 토지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친족의 범위, 기간,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 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5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동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친족 중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 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몰수·추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생 략)	방지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	②
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	
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	
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2. 제4조제1항에 따른
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	
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
	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공
	주택사업자는 소속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지정 또는 변경일부
	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부동

<신 설>

제57조(벌칙) ① ~ ② (생 략) <u><신 설></u>

<신 설>

산을 거래한 내역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역 내의 토지거래 내역을 제출 해야 하는 친족의 범위, 기간,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 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 적 외로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 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57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을 취	취득하	게	한	경-	우에도	제1
항의	형에	처	한디	<b>-</b>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동주택 사업자의 임직원 및 친족 중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 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 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1조(몰수・추징) 제57조제3항 <u>또는 제4항의 죄를 지</u>은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 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